

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복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2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28일

발 의 자: 신복자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동욱, 김영철,
김원중, 김재진, 김태수,
김형재, 남궁역, 남창진,
민병주, 박 석, 서상열,
송경택, 유만희, 유정인,
윤기섭, 이봉준, 이상욱,
이원형, 이종환, 이효원,
이희원, 채수지, 최민규,
허 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여러 영유아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업무 특성상, 이들의 건강 상태는 보육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보육교직원의 건강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음.
- 이에 따라 어린이집 내 감염병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,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2조제1항제12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영유아보육법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보육교직원에 대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비용의 보조)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22조(비용의 보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2. 보육교직원에 대한 「감염</u> <u>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</u> <u>률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</u> <u>른 예방접종 지원</u>
<u>12. · 13.</u> (생 략)	<u>13. · 14.</u> (현행 제12호 및 제13 호와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22조(비용의 보조) 제1항제12호	△	보육교직원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비용이 발생하나 지원단가(P)에 대해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 ⇒ 다만, 질병관리청 자료 등을 활용한 추계 시 총 47,986,685천원 ¹⁾ 소요 예상(참고용으로만 제시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- 안 제22조(비용의 보조)제1항제12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비용은 서울시 관련부서(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 등) 문의결과 비용추계를 위한 지원단가(P)가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 시점²⁾에서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
- [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] 보육교직원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비용³⁾을 추정하려면 우선 백신 지원 금액을 확정하고, 각 백신별 접종률에 대한 통계정보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, 질병관리청⁴⁾ 및 서울시 관련부서의 경우 현재로선 별도 통계를 보유하지 않아 향후 정책수요 조사 등을 통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정확한 금액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- [자체추정 금액] 다만, 각종자료를 토대로 소요비용 자체추정 시 아래와 같음
⇒ 총 47,986,685천원(연평균 9,597,337천원) 수준 소요 예상

- 1) [임의가정에 따른 정합성 오류가능성 존재] 본 추정금액은 전제요소를 임의로 가정하여 대략의 규모를 산출한 것이므로 실제 지원단가(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), 접종률, 투자우선순위 등에 따라 실소요액과 추계액 간 낮은 정합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

⇒ 백신 지원비용은 접종예상률, 예산규모 등 다양한 지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되는 정책적 영역의 부분이므로 임의가정을 통한 소요비용 산출은 추계 객관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아 대략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용(각 백신별 소요비용 파악용)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

- 2) [사유서 작성일] 2025. 3. 26.(수)

- 3) [법정기준]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(필수예방접종)제1항 및 제25조(임시예방접종) 해당질병
⇒ 1. 디프테리아 / 2. 폴리오 / 3. 백일해 / 4. 홍역 / 5. 파상풍 / 6. 결핵 / 7. B형간염 / 8. 유행성이하선염 / 9. 풍진 / 10. 수두 / 11. 일본뇌염 / 12.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/ 13. 폐렴구균 / 14. 인플루엔자 / 15. A형간염 / 16.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/ 17.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등

- 4) [성인 예방접종률 통계부재] 질병관리청 문의결과 폐렴구균(65세 이상), 인플루엔자를 제외한 나머지 백신은 성인 예방접종 관련 사업을 정책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통계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

〔참고〕 보육교직원 감염병 예방접종 재정소요 추정

□ 산출금액

- 총 비 용 = 47,986,685천원(연평균 9,597,337천원)
- 표준산식 = 백신지원단가(P) × 지원대상(Q) × 접종률(R) × 기간(T)
- ※ 세부산출은 아래 <표> 참조

< 보육교직원 감염병 예방접종 각 백신별 재정소요표 >

(단위 : 원, 명, %)

구분	질병명	백신 지원단가(P)			지원대상 (Q)	접종률 (R)	지원비용 (P×Q×R)
		세부내역		총 단가 (A+B)			
		백신비(A)	시행비(B)				
1	결핵	28,070	19,610	47,680	총 49,514 (국공립 민간 등 24,093)	41.8	986,826천원
2	디프테리아	40,680		60,290			
	파상풍						
	백일해						
	폴리오						
	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						
	인플루엔자						
	B형간염						
3	폐렴구균	24,470	44,080	25,421			
4	홍역	16,430	36,040	+	민간 등		
	유행성이하선염						745,915천원
	풍진						
5	수두	15,920	35,530		735,359천원		
6	일본뇌염	13,760	33,370		690,654천원		
7	A형간염	24,470	44,080		912,317천원		
8	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	69,690	89,300		1,848,229천원		
9	로타바이러스	53,730	73,340		1,517,907천원		
합 계							9,597,337천원

참고 1) 백신 제품별로 가격이 상이하나 규모파악을 위해 최저 공공조달 금액 기준으로 산출

⇒ 질병관리청 고시로 지정되는 장티푸스 및 신증후군출혈열과 임시예방접종(지극히 이례적 상황)은 제외하였고, 시행비는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5-134호〔별표2〕일반백신 시행비를 토대로 작성함

2) 지원대상은 서울시 여성가족실 제공자료를 토대로 추정하며, 접종률은 인플루엔자 접종률 기준으로 작성

3) 각 백신별 지원비용(P×Q×R)은 규모파악 용이성을 위해 천원 단위로 작성

자료 :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5-134호 등을 토대로 재정분석담당관 재작성

□ 산출한계

- 현 시점에서 수집가능한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비용을 산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한계가 존재함
 - (지원대상 미구분) 국공립, 민간 등을 구분없이 하나의 단가로 추정하였다는 점
 - (접종률 임의가정) 각 백신별 실접종률이 부재하여 대략의 수치를 가정하였다는 점
 - (접종수요 미반영) 각 질병별 접종수요를 미반영한 전체백신 기준 일괄 지원을 가정하였다는 점 등
- 임시예방접종은 각종 자료 및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이례적 상황에 해당하여 미반영
 - 임시예방접종은 코로나 등과 같은 지극히 이례적 상황에 시행되는 예방접종이므로 고려사항에서 제외함
 - ⇒ 현재로선 이례적 상황을 추정할만한 정보 또한 적어 통상적 사례를 통한 자체추계도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